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6. 28 선고 2021가단465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소송대리인 D

2. D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6.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8. 3.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7. 6. 18. 접수 제176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는 피고들과 E 사이에 2016. 8. 3.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2.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2021. 6. 10. 선고 2020다265808 판결 등 참조).
-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는 2016. 8. 3.이고, 이와 다른 날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21. 12. 14.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이에 더하여, 원고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

별지